# 2011년도 전문건설업 실적신고서 작성 안내서

○신고대상 : 신고일 현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서 시공능력

평가 · 공시를 희망하는 업체

○신고기간 : 2012. 2. 15(수)까지 [기한엄수]

○접 수 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각 시·도회

#### ※ 주의사항

본 교재를 필히 숙독 후에 실적신고 제반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례

I.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 4
1. 시공능력평가란?
2. 시공능력평가액의 공시
3. 실적신고의 법적신고 기한
4. 과세자료의 제출
5. 실적신고 서류의 허위 제출 시 제재사항
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불법·불공정 행위 시 건설공사실적 인정 범위
7. 실적신고의 미제출시 불이익
8. 2012년도 시공능력평가ㆍ공시 절차
Ⅱ. 2011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지침
1. 실적신고 접수기간
2. 실적신고 대상업체
3. 실적신고 접수처
4. 실적신고 시 제출서류
5. 공사실적 확인서 및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발급
6. 포괄적 양도양수, 합병, 상속업체의 실적승계
7. 허위·과다신고 등 유형
7. THE TELESTICATION OF THE TE
Ⅲ. 건설공사 실적신고 작성요령
1. 2011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에 따른 유의사항
2. 2011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시 제출서류
가. 실적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나. 경영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다.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라. 신인도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마. 건설업자 종합정보실태 제출서류
3. 2011년도 실적신고 서류 편철순서
Ⅳ. 기 타 사 항 ·································
1. 건설업자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
2. 건설기술개발투자비 인정 기준
3. 전문건설업자의 2012년 시공능력평가 방법
0. EE EE E A 1 - 1 2012 EE 10 0 1 0 7 0 6
[별 첨]31
1. 2011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실태사항 프로그램 설명서
2. 기성실적신고서(내역표) 및 건설기술인력보유신고서 CODE 작성요령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실적신고는 반드시 협회에서 자체 개발한 실적신고프로그램 및 인터넷 실적신고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됨(수기는 안됨)
실적신고 서류의 제출기한은 2012년 2월15일까지임. 단 재무제표에 한하여 2012년 4월 16일까지(개인업체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시공능력평가 및 경영상태, 공사실적 등의 증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음
2011년 실적신고는 2011년12월31일 기준 신고업체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 신인도 등을 기준으로 함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비)과세표준증명원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각장 마다 날인 또는 간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결산재무제표의 경우「손익계산서상 건설매출액 또는 공사수입금」항목이 나타나야 함
실적신고 시 금액단위는 천원이며(천원미만은 절사), 건설공사실적은 반드시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기재)한다. 단, 재무제표의경우 원단위로 입력함
실적신고 서류의 제출 시 협회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정확하게 첨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시공능력평가 및 입찰적격심사에 반영됨
보유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고하되 반드시 (하)도급 받은 건설업종만으로 건설공사실적을 건별 입력(기재)함
기 신고된 사항(공사실적, 재무제표, 기술자 등) 이외에 누락된 내용은 추가접수가 안되며, 2011년도에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신고를 하여야만 시공능력평가 및 제증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기성실적증명서 [서식6-1]는 실적증명자(발주자 또는 수급인)에 대한정보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누락없이기재된 경우만 인정됨으로 반드시 입력(기재)하여 날인을 받아야 하고, 「공사규모・적용된 공법」은 가급적 공사의 특성이 정확히 반영될 수있도록 상세히 입력(기재)하여야 하며, 「공사규모・적용된 공법」에 관한실적증명을 협회로부터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력(기재)사항을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부터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적격심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공급자재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공급자재액증명(신청)서 [서식6-2] 를 별도로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실적신고 내용은 업체별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어 과세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적신고 한 내용과 세무서의 신고내용은 일치하여야 함 (과세자료제출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불법·불공정 행위의 건설공사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할 등록관청에 행정제재 처분을 의뢰함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영업정지처분위반 계약공사, 건설업등록 이전 계약공사 등)
실적신고 서류의 허위제출 시 관련법령에 의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행정 조치함
제출한 실적신고 서류를 토대로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관할 등록관청에 통 보함
해당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업종으로 신고하는 경우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등록 시공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임

## I.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

#### 1.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되, 평가는 연 1회 정기평가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적용 기간은 매년 공시일(7월 31일)부터 익년도 공시일 이전까지 임

#### 2. 시공능력평가액의 공시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공시 및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았음.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7월 31일까지 협회 정보 통신망 등에 공시하고, 일반인이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며, 건설업 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재하여야 함.

#### 3. 실적신고의 법적신고 기한

시공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4월 15일까지는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 [국토부 건경58113-139호(2001. 2. 7)]이 있어 2월 15일 이후에는 실적신고 접수가 불가능함

#### 4. 과세자료의 제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회에 제출한 전문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신고 자료는 관할세무서에 통보되어 과세기초자료로 활용됨

#### 5. 실적신고 서류의 허위 제출 시 제재사항

- 가.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연도와 그 다음연도의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 나.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1항)
- 다.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영업정지 4월의 행정제재 처분(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 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불법ㆍ불공정 행위의 건설공사실적 인정 범위

#### 가. 허위실적신고

시공능력공시를 위하여 건설공사실적, 기술인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신고한 자(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2, 법 제97조 제1호)

- o 공사실적 인정 범위 : 공사실적 불인정
- \* 수사기관 고발, 영업정지 4월, 부정당업자 제재, 시공능력 삭감

#### 나. 일괄하도급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법제29조 제1항, 법제82조 제2항 제2호, 법 제96조)

- o 공사실적 인정 범위
- 일괄하도급 준 자 : 실제수행한 부분만 공사실적 인정(일괄하도급 준 공사실적 불인정)
- 일괄하도급 받은 자 : 공사실적 불인정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6월~8월 또는 하도급금액의 6/100~ 30/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

#### 다. 재하도급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법제29조제4항,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 o 공사실적 인정 범위
  - 재하도급 준 자 : 실제수행한 부분만 공사실적 인정(재하도급 준 공사실적 불인정)
  - 재하도급 받은 자 : 공사실적 불인정
- \* 영업정지 4월~6월 또는 하도급금액의 4/100 ~ 24/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

#### 라. 영업정지처분 위반 계약체결

법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7호)

- o 공사실적 인정 범위 : 공사실적 불인정
  - \* 등록취소

- 마. 하도급계약체결 통지위반 및 허위통보
- o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내용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및 법제99조 제5호)

법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제3호)

- o 공사실적 인정 범위 : 적법하게 실제 시공한 공사실적 인정
- \* 통지위반(150만원 과태료)

#### 7. 실적신고의 미제출 시 불이익

- 가.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제2항)
- 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 다.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참가자를 제한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 라.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은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 마. 일반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및 하도급공사 수주를 제한받을 수 있음

#### 8. 2012년도 시공능력평가 · 공시 절차

강습회 실시

- ◇ 2011년도 실적신고 강습회
  - 각 시·도회 사무처
- ◇ 실적신고프로그램 및 실적신고서작성안내서 수령
  - 각 시·도회 사무처



프로그램설치 및 실적신고서류 작성

- ◇ 실적신고서작성안내서 숙지
- ◇ 실적신고 프로그램 설치(실적신고 홈페이지 다운로드)



실적신고 증빙서류 준비 및 확인

- ◇ 실적신고 증빙서류 준비 및 확인
  - 기성실적증명서 확인(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 건설공사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필) 준비
- ◇ 기술능력평가 증빙서류 준비
  - 건설기술자자격증(경력증)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
  - 기술개발투자비지출확인서 등
- ◇ 신기술지정/우수건설업체/ISO/해외건설현장인력고용확인서 등



신고서류 편철 및

협회 실적신고

- ◇ 실적신고프로그램에 작성한 실적신고서류 출력 및 편철
  - 통계청제출서류 별도 편철
- ◇ 각종 증빙서류 첨부
- ◇ 제출서류 및 미비서류 유무 확인, 납부할 회비 확인
- ◇ 협회 실적신고(2012년2월15일까지) 및 회비납부
  - \* 인터넷신고 시 제출서류의 우편발송은 2012년2월15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재무제표 : 2012년4월16일 (단, 개인업체는 2012년5월31일까지)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작업

- ◇ 건설공사실적신고접수확인서 발급: 2012년2월16일부터
- ◇ 실적확인서 및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발급
- 실적확인서(실적확인서, 총괄표, 내역표 등)
  - · 전문건설업종(기계설비, 시설물, 가스시설시공업제외): 2012년7월2일부터
- 경영상태등의확인서 : 2012년7월2일부터



2012년도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자료 확인(협회 마이페이지)
- ◇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 2012년7월31일

(공시방법 : 협회 정보통신망)

- ◇ 시공능력평가액 기재 : 2012년7월31부터
  - 기재장소 : 각 시·도회 사무처

## Ⅱ. 2011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지침

#### 1. 실적신고 접수기한

- 가. 건설공사 실적신고 서류(증명서류 포함) : 2012년 2월 15일까지 제출
- o 인터넷 실적신고 시 제출서류의 우편발송은 2012년 2월 15일 도착 분까지 유효

#### 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서류

- o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2012년 4월 16일까지 제출(단, 개인업체는 5월 31일까지 제출). 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자(직전연도 자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인 경우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결산한 재무제표 제출
- 2. 실적신고 대상업체 : 신고일 현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서 시공능력 평가·공시를 희망하는 업체
- 3. 실적신고 접수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해당지역 시·도회
- 4. 실적신고 시 제출서류
  - 가. 실적신고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실적신고 내용이 저장된 전산디스켓 1부.
  - o 인터넷 실적신고 시에는 온라인 전송
  - 나. 전산디스켓에 저장된(인터넷실적신고 시 온라인 전송된) 실적신고 출력내용(원본) 1부.
  - 다. 각종 증명서류
- 5. 공사실적 확인서 및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발급 (정부·공공공사의 PQ 및 적격심사 적용)
  - 가.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
  - o 2012년 7월 2일부터 : 전문건설업종(기계설비, 시설물, 가스시설시공업 제외)
  - 나.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발급
  - o 2012년 7월 2일부터 : 전문건설업종(기계설비, 시설물, 가스시설시공업 제외)

#### 6. 포괄적 양도양수, 합병, 상속업체의 실적승계

가.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공사의 실적과 건설업 영위기간이 승계 됨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제23조 제5항) 따라서 양도자의 기성실적증명서와 도급계약서사본 등과 양도신고 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①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 → 법인)
- ② 건설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합명, 합자, → 유한, 주식회사)
- ③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건설법인 → 회사분할, 건설법인 → 회사분할, 합병)
- 나. 합병, 상속의 경우에도 건설공사의 실적은 승계(합병전, 상속전 업체의 기성실적증명서, 도급계약서 사본 등과 합병·상속 신고수리서 사본을 첨부)함.

#### 7. 허위신고 등의 유형

- 가. 관급자재액을 포함하여 공사실적을 신고한 경우
- 나. 공동도급공사의 타사 시공액까지 포함하여 공사실적을 신고한 경우
- 다. 전년도에 기 신고한 공사실적을 당해연도 공사실적으로 이중 신고한 경우 (업종을 달리하여 이중 신고한 경우 포함)
- 라. 기성실적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신고한 경우 [공사금액 단위 앞 또는 뒤에 숫자를 변조(추가) 기재한 경우 등]
- 마. 건설업 이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물품구매 및 납품, 장비임대, 조사, 타워크레인, CCTV촬영·설치, 용역(설계용역, 운영위탁용역) 등의 내용을 공사실적 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 바. (하)도급 받은 공사의 당해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공사실적을 신고한 경우
- 사. 미기성분을 포함하여 공사실적을 신고한 경우
- 아. 변경감액 된 공사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공사실적을 신고한 경우
- 자. 선급금 또는 지연이자 포함하여 공사실적을 신고한 경우
- 차.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물품(자재)의 구매내용을 신고한 경우
  - ※ 경영평가, 기술능력평가, 신인도평가 관련 신고사항도 포함

## Ⅲ. 건설공사 실적신고 작성요령

#### 1. 2011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에 따른 유의사항

- 가. 실적신고는 반드시 협회에서 자체 개발한 실적신고프로그램(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인터넷실적신고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 o 양식에 수기 또는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한 서류의 작성 및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 o 실적신고서작성안내서 배부 : 각 시·도회 사무처에서 직접 수령
    - ※ 실적신고홈페이지를 이용한 자료내려받기 : http://siljuk.kosca.or.kr
- 나. 실적신고 서류의 제출기한은 2012년 2월 15일까지임. 단 재무제표에 한하여 2012년 4월 16일까지(개인업체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음.
- o 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추가 접수가 불가능함.
- 나-1. 통계청 자료는 실적신고 프로그램에 입력 후 전송(서류제출 불필요) (기계설비공사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겸업체는 전문건설협회에 전송)
- 다. 2011년도에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도 제 서식을 갖추어 법정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만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음.
- o 실적의 유무 구분없이 실적신고를 하여야만 2012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음
- o 신규등록업체의 경우 전문건설업 등록일 이전 계약한 공사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 라. 2011년 실적신고는 2011년 12월 31일 현재 신고업체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기준으로 함.
- o 실적신고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건설공사실적을 신고하는 것임 (2011년도 신규등록업체는 신규등록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함)
- o 건설기술자의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건설기술자로서 2011년 12월 31일 기준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시공능력평가 산정 시 인정됨(2011.12.31일 입사자,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인정되지 않음)
- o 실적신고 시 금액단위는 천원이며(천원미만은 절사), 건설공사 실적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VAT)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기재)한다. 단, 재무제표의 경우 원단위로 입력 함.
- 마. 보유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고하되 반드시 (하)도급 받은 건설업종 으로 공사실적을 건별 입력(기재)하여야 함.
- o 여러건으로 계약·시공한 건설공사를 1건공사로 신고하거나, 단일업종으로 계약·시 공한 건설공사의 부대공종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o 건설업 이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물품구매 및 납품, 장비임대·조사, 타워

크레인, CCTV촬영·설치, 용역(설계용역, 운영위탁용역) 등은 제외 함.

- 바. 불법·불공정 행위의 건설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할 등록관청에 행정제재처분을 의뢰함(일괄하도급, 재하도급, 영업정지처분위반 계약공사, 건설업등록이전 계약 공사)
- 사. 기성실적증명서 [서식6-1] 는 실적증명자(발주자 또는 수급인)에 대한 정보 [상호, 대표 자, 전화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소] 가 누락없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됨으로 반드시 입력(기재)하여 날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규모・적용된 공법」은 가급적 공사의 특성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공사규모・적용된 공법」에 관한 실적증명을 협회로부터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을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 부터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하)도급계약서 제출시에는 확인 불가함)
  - o 기성실적증명(신청)서의 기재내용은 동일글씨이어야 하며, 수정이 있는 경우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필히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날인을 받아야 함.
  - o (하)도급계약서 제출 시에도 실적증명자 정보사항을 입력(기재)하여야 함.
  - o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 공사계약 연월일, 공사기간, 계약자쌍방 상호, 대표자 성명 및 계약금액이 명시된 요식을 갖춘 서류이어야 함.
  - o 계약액만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성실적증명(신청)서 또는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서식6-1] 및 발주자공급자재액증명(신청)서 [서식6-2] 상의 「공사내역( - )」에 기성실적신고서(내역표) [서식5번] 의 ④업종부호 및 ⑤일 런번호를 표기함.
- 자.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간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o 결산재무제표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건설매출액, 공사수입금 항목이 나타나야 함
- 차. 재무제표 제출시 실적신고 금액이 재무제표상의 매출액보다 10%(부가세)이상 초과 업체의 경우에는 소명서를, 기타 건설업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카. 건설기술자(기능사)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만 인정되며, 건설기술자 1인이 여러 종류의 기술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과 학·경력 기술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의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1개 기술자격만을 선택하여 보유업종에 적용함.
- 타. 직전연도분(2010년)의 전체 또는 일부공사 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2011년 실적 신고 시 함께 제출(각 연도별 신고)할 수 있음.

- 파. 당년도(2011년)에 실제 준공처리되고 기성실적증명(신청)서도 발행되었으나 세금계산 서는 익년도(2012년)에 발행된 경우라도 당년도(2011년)의 공사실적으로 인정가능함.
- 하. 실적신고 서류는 편철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법인(개인은 대표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함.
- 거. 실적신고 서류는 반드시 사실내용을 입력(기재)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제출하는 서류 중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완하여야하며 불응한 경우에는 보완·제출할 때까지 시공능력평가를 하지 아니함.

[건경16070-862(2003.9.1)]

- 너. 협회에 제출 시 필히 원본으로 제출하고,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 서류는 필히 원본대 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서, 자격증(경력증), 신기술지정, 우수건설업자지 정, 국제품질인증(ISO) 등]
- 더. 「기성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시에는 공사실적에 대한 증명(첨부)서류의 확인이용이하도록 증명(첨부)서류 하단 [도급계약서, (재)하도급계약서는 하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비고란]에 각 공사건별 기성실적신고서(내역표) [서식5번]의 ④업종부호 및 ⑤일련번호를 표기함.

#### 2. 2011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제출서류

### 가. 실적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서식1~서식6]

- (1) 2011년도 건설(전문)공사 기성실적신고서 [서식1]
- (2) 건설산업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 2]
- (3) 2011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확인서 [서식 3]
- (4) 2011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총괄표 [서식 4]
- (5) 2011년도 건설(전문)공사 기성실적신고서(내역표) [서식 5]
- (6)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서식 6-1]
- (7) 발주자 공급자재액 증명(신청)서 [서식 6-2]

## ◆ 건설공사 기성실적 인정을 위한 증빙(첨부)서류 ◆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원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

- o 증빙서류 : 당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서식 6-1] 〈유의사항〉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이외의 다른 서류로는 실적인정이 안됨
- 해당관서의 장이 확인하지 않고 해당실무자(담당자)가 확인한 기성실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나) "가"이외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원도급, (재)하도급공사의 경우

- o 증빙서류 : ①과 ②의 서류
  -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하)수급인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서식 6]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 (재)하도급인 경우에는 (재)하도급계약서 사본
  - ② 해당업체의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 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 〈유의사항〉

- ①과 ②의 2가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통한 전자날인방식(공인전자서명)의 기성실적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재)하도급계약서 인정
- 도급계약서, (재)하도급계약서 제출은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하도급자의 부도, 해외장기체류 또는 신청인과의 분쟁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거리 및 시간상의 사유는 해당되지 아니함.

#### (다) 자기공사인 경우

o 증빙서류 :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건설 공사 기성실적증명서

#### 〈유의사항〉

- 자기건설공사란 회사에서 계획·설계하여 시공까지 자체예산으로 수행한 건설공사를 말하며 도급 받은 공사가 아님

#### (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공사인 경우

o 증빙서류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 〈유의사항〉

해외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외에서 공사한 경우에만 인정 됨.

####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인 경우

- o 증빙서류 :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와 도급계약서 사본
- (바) 외국인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2항)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해당국가의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단,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 국가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 나. 경영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 (1)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 o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201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각장 마다 날인 또는 간인)
- o 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부감사대상인 건설업자(직전연도 자산총 액이 100억원 이상인자)인 경우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결산한 재무제표 제출
- o 자체기장 등으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세무사가 조정한 세무조정계산서(재무제표 포함)를 제출
- o 자체 기장하는 업체로서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을 받지 않는 업체의 경우
- 업체에서 자체기장 한 재무제표를 대표자(대표이사)가 날인하여 제출하고 공문서를 첨부 (자체기장, 세무서에 제출한 것과 동일, 위·변조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 포함) 하여 함께 제출
- o 제출기한
- 2011년 12월말 결산법인 : 2012년 4월 16일까지
- 2011년 12월말 이외의 결산법인 : 직전회계연도 결산서를 2012년 4월 16일까지
  - \* 직전회계연도 부가가치세(비)과세표준증명서 함께 제출
- 개인업체 : 2012년 5월 31일까지

#### 〈유의사항〉

- o 실적신고를 하였어도 재무제표를 법정기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음.
- o 재무제표를 협회에 제출한 후 수정된 결산재무제표의 제출은 불가능 함.
- 재무제표가「법인세법」및「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조 세에 관한 신고서류로서 제출기한 내에 세무서에 정식 제출된 것만 인정함.
- o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중 건설매출액 또는 공사수입금이 구분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2) 소명서

- o 실적신고액이 매출액보다 10%(부가세)이상 초과한 업체만 작성 제출
- (3) 기타 건설업 매출액에 대한 증빙서류(겸업매출 산정 시 필요)
- o 기타 건설업 매출액이 있는 업체만 제출

#### 다.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 (1) 건설기술인력 보유 신고서 [서식7]

- o 당해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 인정하는 건설기술자(기능사)로서 2011년 12월 31일기준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자를 입력(기재)함.(2011월12월31일 입사자, 비상근임원, 일용 및 임시고용원 건설업이외 타산업종사자 제외)
- o 건설기술자 1인이 여러 종류의 기술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과 학·경력 기술자격을 동 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의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1개 기술자격만을 선 택하여 보유업종에 적용함
- o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경력자의 기술자격을 우선적으로 신고하되 반드시 기술분야 및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로 인정됨.
- o 기술자가 자격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업체에 재직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
- o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함.

#### 〈유의사항〉

- o 건설기계조종사 운전면허증은 건설기술자로 인정되지 아니함.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기능사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됨)
- 소형건설기계(5톤 미만의 불도저 및 로더, 3톤 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조종사 면허는 건설업 관리지침에 해당분야 기술자로 인정되지 아니함.
- o 조경식재·시설물설치 업종의 경우 학·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자는 국토개발분야 중 전문 분야가 조경으로 된 경우에만 인정함.
- o 포장공사업에 한하여 콘크리트믹스운전기능사 자격소지자가 1999년 10월 26일 이전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됨.
- o 보링·그라우팅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참고사항〉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건설기술자의 종류

#### 국가기술자격자

- o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종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기사·산업기사]
- o 건설업관리지침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

#### ② 학력·경력기술자

o 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력·경력기술자로 등록된 자(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 ③ 경력기술자

o 건설기술관련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기술자로 등록된 자 (경력기술자는 분야 및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 ④ 인정기능사

o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별표2 비고 1.기술능력 라목 규정에 의하여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건설기술자임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첨부)서류 ◆

구 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011년12월31일현재 재직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계 기술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다음 서류중 택일하여 1가지 서류를 제출 ①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보유(경력) 증명서 ②갑근세납입증명서(세무대리인 확인) + 근로계약서(입사일자 또는 계약기간 명기)
기능계 기술자	기술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③건강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④국민연금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건설기술자 (기술자격자, 학력 · 경력자, 경력자) [초급·중급·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경력증 사본	⑤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 대표자가 기술자인 경우 재직중임을 증명 하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EDI 문서의 경우에는 전산출력원본
인정기능사	인정기능사 경력증 사본 또는 인정기능사 보유증명서	(업체확인필)을 제출하여야 함  ※ 재직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보유(경력)증명서 포함]는 2012년 1월 1일이후 발급된 서류 이어야 한다(발급기관에 발급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하여야 함)

<sup>※</sup> 국가기술자격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증사본(원본대조필) [국가기술자격 기술종목·등급·합격일자 명기시] 으로 인정함

###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신고서[서식 8]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제1항에 의한 건설공사 등에 참여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에 한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됨

#### 〈참고사항〉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임

- \* 공제제도 가입대상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워 이상인 공사
-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워 이상인 공사
- 200호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의 건설공사
-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3) 2011년 기술개발투자비 신고서[서식 9]

2011년 기술개발투자비 신고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과 관련하여 2011년도에 건설부문과 비건설부문에 지출된 금액을 기재(①부문을 건설부문과 비건설부문으로 구별)하고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가 확인한 기술개발투자비 지출확인서 또는 기업진단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됨 [건설경제담당관실-4829(2004.11.4)]

#### 〈유의사항〉

- o 다만, PQ 및 적격심사시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서류만으로 인정
- o 건설부문과 비건설부문에 지출된 금액을 구분하여 입력(기재)하여야 함
- o 필요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공세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등의 서류 첨부
-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중 2011년도에 건설부문에 실제 사용된 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하여 인정됨 (시행령 별표5는 2007.2. 28 폐지)
- o 기술개발투자비는 2012년 2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추후 변경된 업체는 재무제표 제출시 수정·보완이 가능함.

#### 라. 신인도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 (1) 신기술지정 신고서[서식 10]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보호기간내) 업자는 신기술지정증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됨

#### 〈유의사항〉

o 특허, 실용신안, 국토해양부 이외의 정부부처의 신기술, 기술협약서 등은 해당되지 아니함

#### (2) 우수건설업자 지정 신고서[서식 1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우수 건설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지정된 경우(유효기간 내) 우수건설업자로 지정 받은 지정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한 공문사본 또는 일간신문이나 관보에 공고한 우수건설업자 공고문 사본을 제출하여야 인정됨

#### 〈유의사항〉

o 건설공사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공사가 대상이며,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해 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함

#### (3) 품질·경영 등의 인증자격 취득 신고서[서식 12]

품질·경영 등의 인증자격 취득사항은 건설업자가 ISO 등을 취득한 경우(유효기간 내)에 품질·경영 인증서 사본과 사후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됨

o 2011년12월31일 이전 취소 또는 반납, 사후심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4) 2011년도 국내인력의 해외건설현장 고용신고서[서식 1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현장에 국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해외건설협회에서 발행한 해외건설현장인력고용확인서 및 2011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됨

#### 〈유의사항〉

o 해당업체가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국내인력수(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에 한하여 1인으로 인정)를 기준으로 하며 하도급업체 또는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인력의 수는 제외함

#### (5) 기타 신인도평가 사항

기타 신인도평가 사항인 부도업체, 건설업영위기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행정제재사항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은 협회에서 확인한 자료로 평가함으로 업체에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마. 건설업자 종합정보실태 제출서류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는 입력(기재)할 필요가 없음]

#### (1) 시설, 장비 및 포지 등의 보유현황[서식 14-1~14-3]

#### 〈유의사항〉

- o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 전세, 지상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시설·장비 및 조경식재 포지와 수목 등에 대하여 입력(기재)함
- o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기재하되 시설은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을 포함하고 장비는 건설기계와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상의 모든 장비를 입력(기재)함
- o 조경식재업체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포지와 수량에 대하여 입력(기재)하고 대표적인 수종을 입력(기재)함

#### (2) 임원 현황[서식 15], 대표자 이력서 [서식 20]

#### 〈유의사항〉

- o 법인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입력하며, 대표자 현황 및 이력사항을 입력 (기재)하여야만 출력이 가능함.
- o 임원의 경우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임원과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임원 전체(관리인, 법정관리인, 보전관리인 포함)를 입력(기재)함.

#### (3) 기타 인ㆍ허가 및 등록사항 [서식 16]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인·허가 및 등록사항 전부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인·허가 및 등록증 사본을 첨부함.

#### (4) 협력업체 등록현황[서식 17]

일반건설업자에게 협력업체로 등록한 경우에 기재하며, 등록 및 계약내용을 기재함 (일반건설업체로부터 1건의 건설공사도 수주하지 못하였을 경우도 협력업체등록 사항을 기재함)

#### (5) 건설기술도입에 관한 사항[서식 18]

업체가 외국 또는 국내기관 등으로부터 건설분야의 신기술·신공법을 도입한 경우에 기재함.

#### (6) 외국인 출자・투자에 관한 사항[서식 19]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가 자기회사에 출자 및 투자한 내용과 외국인에 대한 업체의 권리·의무사항, 외국인이 가지는 지위·권한사항을 기재하고 외국인 출자·투자사실 신고서를 제출함.

## 3. 2011년도 실적신고 서류 편철순서

편철순서		서식번 호	제 목	중명(첨부)서류
표지 1			2011년도 건설(전문)공사 기성실적신고서	
정보활용 동 의 서 2 서식 2 건설산업 정보활용 동의서				
동의서		719 2	[선물산업 정보철장 중위시	
	3	서식 3	2011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확인서	* 증명서류(필요시) - 소명서 자료 : 실적신고 금액이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보다 10%(부가세)이상 초과업체 - 기타 건설업 매출액에 대한 증빙서류(겸업매출액 산정)
	4	서식 4	2011년도 건설(전문)공사 기성실적총괄표	
실적평가 자료사항	가     5     서식 5     2011년도 건설(전문)공사 기성실적신고서 (내역표)     ①			1.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의 원도급공사 경우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서식6」 2. "1"외 법인 또는 개인의 원도급,(재)하도급공사 경우 ①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②도급계약서, (재)하도급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 도급계약서, (재)하도급계약서 제출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6	서식 6-1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 실적증명자 정보(발주자, 원도급자 확인란) 반드시 입력(기재)
	7	서식 6-2	발주자 공급자재액 증명(신청)서	* 필요시
경영평가 자료사항	8			o 2011.12월말 결산법인 : 결산재무제표증명원 o 2011.12월말 이외 결산법인 : 직전회계년도 결산서+ 부가가치세(비)과세표준증명원
기술능력 평가자료 사 항	9		건설기술인력 보유신고서	1. 기술자(기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증 또는 경력증사본(원본대조필) 단, 국가기술자격자로 신고하는 경우 건설기술자보유(경력) 증명서 또는 경력증사본(원본대조필) 가능 2. 기술자(기능자)가 재직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택일) ①건설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②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대리인확인)+근로 계약서(입사일자 또는 계약기간 명기) ③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④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⑤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 2011.12.31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만 해당됨 공제부금납부확인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행)
	10	서식 8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고서	하게 구입 다 워인스(선실 다 도시) 전 설명   1
	11	서식 9	2011년 기술개발투자비 신고서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①기술개발투자비지출확인서 또는 ②기업진단서
	12		신기술지정 신고서	신기술지정증서(원본대조필)
신인도평가	13	서식 11	우수건설업자지정 신고서	①지정서 ②관련공문 사본 ③일간신문 또는 관보 공고문 중 1가지 택일(원본대조필)
자료사항	14	서식 12	품질·경영 등의 인증자격취득 신고서	품질·경영 등의 인증서 사본(원본대조필)(국문번역문 포함) 사후심사보고서
	15		2011년도 국내인력의 해외건설현장 고용신고서	해외건설현장인력고용확인서(해외건설협회 발행) 및 2011.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본대조필)
	16		시설, 장비 및 포지 등의 보유 현황	
건설업자	17		임원 현황 기타 인·허가 및 등록 사항	이 원기 미 드로즈 제법/이번레크레
종합정보	18 19		기타 인·어가 및 등목 사망   협력업체 등록 현황	인·허가 및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2) 1 1 2 2 4 4 4 4 5 4 2 5			기술도입에 관한 증명서
	20	서식 18	건설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도입계약서 사본 및 비용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 항	21		외국인 출자ㆍ투자에 관한 사항	외국인 출자·투자사실 신고서
	22	서식 20	대표자 이력서	
	2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통계청 제출서류	24	서식21	2011년도 건설업 통계조사표(일반사항, 결산사항)	실적신고프로그램에만 입력(서류제출 불필요)

## Ⅳ. 기 타 사 항

1. 건설업자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단서규정 관련)

#### 가.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란?

- (1)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 별로 평가할 수 있다
- (2) 평가는 년1회 정기평가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적용기간은 매년 7월31일 이전의 공시일 부터 익년 공시일 이전까지 임

#### 나. 실적신고 대상업체

신고일 현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서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를 희망하는 업체

#### 다. 평가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방법으로서 업종별 시공능력평가방법과 동일함. 단, 실적평가액의 산정은 최근 3년간 전문분야의 건설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함

#### 라. 평가대상 업종 및 전문분야

업 종	전 문 분 야
토공사업	발파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구조물해체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착정공사
강구조물공사업	인도전용 강재 육교설치공사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강구조물제작공사
기계설비공사업	자동제어공사

#### 마. 제출서류

전문분야의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적신고는 아래 내용에 따라 업종별 신고서식 중 해당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하고 별도 편철하여 제출함

- (1)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 신청서[별지 1]
- (2) 2011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총괄표[서식 4] [서식4]에 1건 공사의 전체 금액중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실적내용을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후 제출
- (3) 2011년도 건설(전문)공사 기성실적신고서(내역표)[서식 5] [서식5]에 1건 공사의 전체 금액 중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세부실적내용을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후 제출

## (4)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서식6-1]

[서식6-1]에 1건 공사의 전체 금액 중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원도급업체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업종별 기성실적증명(신청)서[서식6-1]과는 별도 작성

#### 【참고사항】

최근 3년간('09년~'11년)의 전문분야 실적을 제출하며 위 기간 중 전문분야 실적을 협회에 이미 제출한 신고 연도분('09년~'10년)은 제외함

[ 별지 1 ]

## 전문분야별 시공능력 평가 신청서

본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전문분야 시공능력평가를 요청합니다.

2012. . .

상 호 : 대표자 : ①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2. 건설기술개발투자비 인정 기준

건설기술개발투자비 인정기준은 건설업자가 [서식 8]의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를 사용한 내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함

##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

구분	비 <del>용</del>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 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 시험용 시
	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④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②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ul><li>☞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li><li>☞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li></ul>
	(4) 산업디자인진홍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홍원
	<ul><li>☞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li><li>☞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li></ul>
	③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삭 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 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
	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
	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아. &소기급에 대한 ㅎ급 옷 상품니자인 개발시고를 뛰어서 사물한 비행  자.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차~너까지 〈삭제〉(2010. 2. 4)

구분	비 용
	<ul> <li>가. 위탁훈련비</li> <li>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li> <li>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li> <li>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li> <li>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li> <li>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li> <li>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li> <li>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용시 경비</li> <li>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li> <li>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li> <li>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li> </ul>

#### 3. 전문건설업자의 2012년 시공능력평가 방법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가. 공사실적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최근 3년간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 ÷ 해당업종별 건설업영위기간)×75/100

- ※ 건설업 영위기간: 1년 미만=1, 1년 이상 3년 미만=건설업영위월수/12, 3년 이상=3
- ※ 건설업영위월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절사함

#### 나. 경영평가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경영평점)×75/100

#### (1) 실질자본금

- o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일 때에는 "0" 으로 함예)실질자본금 = 총자산 총부채
- o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 (2) 경영평점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 ① 유동비율평점 = 유동비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② 자기자본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 ÷ 업계전체가증평균비율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 ③ 매출액이익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 ÷ 업계전체가중평균 매출액순이익율 = 법인세(소득세)차감전 순이익/매출액 × 100
- ④ 총자본회전율평점 = 총자본회전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총자본회전율 = 매출액/총자본 × 100

- ※ 4개 비율평점 (①+②+③+④)을 더하여 4로 나는 것을 경영평점으로 함
- · 이 경우 각 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할 때 "3", -3 이하일 때에는 "-3"으로 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은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율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함
- ·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한 때에는 "3" 으로, 0 이하일 때에는 "0" 으로 함
- (3)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 o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다. 기술능력 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보유기술지수 × 30/100) + 퇴직공제불입금 × 10 + 최근 3년간기술개발투자액

#### (1) 기술능력생산액

- o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함
- o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
- o 보유기술자수는 매 연도말 현재 해당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수로 하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에 1.5, 기술사인 경우에 1.7 그 밖의 기술자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수에 1(기능장인경우는 1.5)을 각각 곱함

#### (2) 퇴직공제 불입금 × 10

-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

#### (3) 기술개발투자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 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

#### 라. 신인도 평가액

신인도 요소별 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 25/100을 초과 할 수 없음

- (1) 신기술의 지정, 우수건설업자 지정 또는 국제품질인증(ISO) 획득업체
  - o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에 한한다)인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함
  - o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것으로 함

#### (2) 건설업 영위기간

o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공사실 적의 연평균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7/100을 각각 더함

#### (3)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업체

- o 직전영업연도에 법제82조제1항1호·제2항제5호 및 법제83조제9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 기간)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뺌
-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1호(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때) 제 2항제5호(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제9호(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 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 (4) 기준재해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

- o 직전영업연도중에 평균재해율의 1~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의 경우 최근 3 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3/100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한 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5/100를 뺀다.
-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 (5) 부도업체

- o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 연평균 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
- (6)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우수업체
  - o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음
  -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요청이 있는 경우
- (7)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
  - o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금액의 0.6/100~2/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금액을 더할 수 있음.
  -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8) 건설공사 실적 등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o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신설 02. 9. 18)

#### 마. 기 타

-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연도 시공 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영평점은 이를 "1"로 한다.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음
- (2) 2 이상 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별첨 1]

2011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실태사항 프로그램 설명서

[별첨 2]

2011년 건설(전문)공사 기성실적신고서(내역표) 및 건설기술인력보유신고서 CODE 작성요령

[서식 5] 및 [서식 7] 관련

## 1. [서식5]의 ④ 건설업등록 업종부호 코드

## 가. 기재요령

- (1) 실적신고서는 한 장에 1개 업종을 기재하며, 보유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공사가 업종별로 각각 1건이라도 각각 별장으로 기재한다.
- (2)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등록 업종명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예) 실내건축공사업 : 0 1

## 나. 전문건설업 등록 업종별 코드표

코드	업종 명	코드	업 종 명
01	실내건축	21	강구조물
02	토공	23	철강재설치
03	미장・방수・조적	24	삭도설치
04	석공	25	준설
05	도장	26	승강기
07	비계구조물해체	29	시설물유지관리업
08	금속구조물・창호	41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09	지붕판금・건축물	42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10	철근콘크리트	43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12	기계설비	51	난방시공업제1종
13	상・하수도설비	52	난방시공업제2종
14	보링・그라우팅	53	난방시공업제3종
15	철도궤도	61	토목공사업
16	포장	62	건축공사업
17	수중	63	토목건축공사업
18	조경식재	64	산업설비공사업
19	조경시설물설치	65	조경공사업

## 2. [서식5]의 ⑦ 토목,건축 및 산업설비, 조경공사의 종류별 분류코드

## A. 토목공사의 종류별 분류 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공사내 <del>용</del>
토목공사 (A)	일반도로 (210)	1.국도공사	A-210-01	• 정부(국가)등이 시행하는 국도공사(터널,교량제외)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개설,증설,보수공사 포함)
		2.지방도공사	A-210-02	•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道)포함)가 시행하는 도로공사(터널,교량제외)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3.시.군도공사	A-210-03	•市(특별시,광역시 제외, 郡에서 시행하는도로공사(터널, 교량제외)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4.사설도로공사	A-210-04	• 민간기업 및 개인이 시행하는 도로공사(터널, 교량 제외)와 이에 부대하는 공사
		5.기타도로공사	A-210-09	• 상기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도로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인도, 중앙선분리대 포함)
	고속도로 (211)	1.고속도로공사	A-211-01	•고속도로 용도로 시행하는 공사와 부대(중앙분리대, 중앙선, 개·보수, 인터체인지식재 등)되는 공사 (터널, 교량, 고가도로 제외)
	고속화도로 (212)	1.고속화도로공사	A-212-01	• 고속화도로공사(도시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와 이에 부대(중앙분리대, 중앙선, 개·보수, 화단조성 등)되는 공사
	도로교량 (220)	1.일반형교공사	A-220-01	• 단순보(girder)형식의 일반교량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2.트러스교공사	A-220-02	•트러스(Truss)를 주형으로 한 교량공사와 이에 부대 되는 공사
		3.아치교공사	A-220-03	• 교량의 주체를 아치(Arch)구조로 하여 시공되는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4.라멘교공사	A-220-04	• 교량기초와 상판이 일체식으로 된 교량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재질:철.콘, 철강)
		5.현수교공사	A-220-05	• 주탑과 수직행거, 기초를 케이블로 연결하여 사용되는 교량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6.사장교공사	A-220-06	• 주형,케이블,탑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각과 상부구조를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는 형식의 교량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수직행거가 없음)
		7.연육교 및 연도로공사	A-220-07	•도로와 연결된 보도용 육교 및 도로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8.P.C교	A-220-08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교, 포스트텐션 콘크리트교 등 제작된 부재를 사용한 교량공사와 이에 부대 되는 공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공사내용	
토목공사	철도교량	1.일반형교공사	A-221-01	• 철도용으로 시공된 일반형교공사 및 이에 부대 되는 공사	
(A)	(221)	2.트러스교공사	A-221-02	• 철도용으로 시공된 트러스교공사와 이에 부대 되는 공사	
		3.아치교공사	A-221-03	• 철도용으로 시공된 아치교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4.라멘교공사	A-221-04	• 철도용으로 시공된 라멘교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5.현수교공사	A-221-05	• 철도용으로 시공된 현수교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6.사장교공사	A-221-06	• 철도용으로 시공된 사장교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7.P.C교공사	A-221-07	• 철도용으로 시공된 P.C교(기성콘크리트제)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댐	1.용수공급댐공사	A-230-01	• 용수를 공급하는 용도로 시공되는 댐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230)	2.수력발전댐공사	A-230-02	• 수력을 이용한 발전용도의 댐 공사와 이에 부대 되는 공사(건축공사 제외)	
			3.홍수조절댐공사	A-230-03	• 홍수조절을 위해 상류에 건설되는 댐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4.다목적댐공사	A-230-04	•용수와 홍수조절 용도로 시공되는 다목적댐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5.하구언공사	A-230-05	• 하구의 유지, 하천정화, 염해방지등의 용도로 시공 되는 하구언 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간척	1.간척공사	A-240-01	• 수면지나 저습지를 육지로 만드는 간척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240)	2.매립공사	A-240-02	• 다른 지역에서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여 토지를 조성하는 매립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항만 (250)	1.항만시설공사	A-250-01	• 접안시설, 하역장비, 보관시설, 수송시설, 선로시설, 선박수리시설등 항만시설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건축공사 제외)	
		2.항만외곽시설공사	A-250-02	• 방파제, 호안, 갑문, 도류제 등 항만 외곽시설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3.인공섬축조공사	A-250-03	• 인공섬 축조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건축공사 제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공사내용
토목공사	<u> </u>	4.요트항등 공사	A-250-04	• 요트항등의 축조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건축공사 제외)
(A)	(250)	5.계류시설공사	A-250-05	•배(선박)를 정박하거나 수리를 위한 시설물 축조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6.조선시설공사	A-250-06	• 선박 건조를 위한 도크 및 인양대설치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7.기타항만공사	A-250-09	• 상기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항만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공항	1.공항부지조성 공사	A-251-01	• 공항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와 이에 부대 되는 공사
	(251)	2.활주로 및 유도로공사	A-251-02	• 활주로 및 유도로시설 토목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3.Gate 및 계류장 설치공사	A-251-03	• 항공기의 주기(駐機)를 위한 대형문(Gate) 및 계류장시설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4.기타 공항공사	A-251-09	• 헬리포트 설치 및 관망탑 등 상기 분류에 속하지 않는 공항관련 토목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도로터널	1.도로용터널	A-260-01	• 차량 통행용으로 시공되는 터널공사와 이에 부대 (절개지보수, 식재 등)되는 공사
	(260)	2.도보용터널	A-260-02	• 도보용으로 시공되는 터널공사와 이에 부대 (절개지보수, 식재 등)되는 공사
	철도터널 (261)	1.철도터널공사	A-261-01	• 철도용으로 시공되는 터널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기타터널	1.운하터널공사	A-262-01	• 수중 및 수상용 터널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262)	2.유수로터널공사	A-262-02	• 유류 및 물의 수송을 위한 터널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일반철도 (270)	1.철도공사	A-270-01	• 선로, 선반 등 철도에 필요한 토목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2.정차장 및 수리시설공사	A-270-02	• 철도차량 정차 및 수리시설과 관련한 토목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고속철도 (271)	1.고속철도공사	A-271-01	• 고속화를 위한 고속철도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지하철	1.지하철공사	A-272-01	• 지하철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건축공사는 제외)
	(272)	2.정차장 및 수리시설공사	A-272-02	• 지하철도차량의 정차 및 수리시설과 관련한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공사내용
토목공사 (A)	택지조성 (280)	1.택지조성공사	A-280-01	• 택지(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토목구조물 공사 포함)
	공업용지 조성(281)	1.공업용지 조성공사	A-281-01	• 공업용지 및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1.치산,치수공사	A-282-01	• 산림 및 하천보존을 위하여 시행되는 토목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282)	2.사방공사	A-282-02	• 흙이나 모래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사방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3.하천공사	A-282-03	• 하천관리를 위한 河道공사, 유수지공사, 제방 (홍수방지)공사, 신천공사, 하천시설물(수제,통문, 갑문,수문 등)설치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4.저수지공사	A-282-04	• 하천 및 우수를 모아 저장하는 저수지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농업용 저수지공사 제외)
	상수도 1천 mm 이상 (290)	1.상수도 부설	A-290-01	• 상수도관(직경 1천mm 이상)을 부설하는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상수도 1천 mm 미만 (291)	1.상수도 부설 공사	A-291-01	• 상수도관(직경 1천mm 미만)을 부설하는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하수도 (292)	1.하수의 송·배수관공사	A-292-01	• 하수 송배수관 설치 및 하수도 관련 토목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관거,맨홀,사이펀시설 등 포함)
	정수장 (294)	1.정수장설치 공사	A-294-01	• 정수장 설치를 위한 기기설치 및 각종 부대공사 와 이와 유사한 공사
	관계수로. 농지정리	1.농업.임업 관련공사	A-293-01	• 농업,임업,수산업 관련 토목시설물공사 및 관개 수로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293)	2.농.경지 정리공사	A-293-02	• 농 · 경지의 정리 및 조성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3.농업용저수지 및 시설물공사	A-293-03	• 농업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저수지 조성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기타토목	1.군사시설공사	A-299-01	• 군사시설용 토목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기타도록 시설 (299)	2.장례 및 묘지 시설	A-299-02	• 장례 및 묘지시설을 위한 토목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 ,	3.기타토목공사	A-299-09	• 상기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토목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 B. 건축공사의 종류별 분류 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공사내용
건축공사	단독주택 및	1.단독주택	B-410-01	• 개인용 단독주택과 가정보유시설을 포함한다.
(B)	연립주택 (410)	2.다중주택	B-410-02	•100평 이하로서 하숙집 등과 같이 단독주택 형식의 건축물(다세대 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
		3.공관	B-410-0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단체)의 기관장이 거주하는 공관과 외국공관에 해당하는 건축물
		4.연립주택	B-410-04	•1개동의 건축연면적이 300평 이상이고 4층 이하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5.다세대주택	B-410-05	•1개동의 건축 연면적이 300평 미만이고 4층 이하인 주택
	저층아파트 (5층이하) (411)	1.저층 아파트	B-411-01	• 아파트 층수가 5층 이하인 아파트
	고층아파트 (6층~15층 이하) (412)	1.고층 아파트	B-412-01	• 아파트 층수가 6~15층 까지의 아파트
	초고층아파트 (16층이상) (413)	1.초고층 아파트	B-413-01	• 아파트 층수가 16층 이상인 아파트
	주거,사무실 겸용건물 (414)	1.근린생활시설	B-414-01	• 1,000㎡ 미만인 근린생활시설(주거용 건축물과 사무실용 건축물의 혼합건축물, 주상복합건물)
	상가,백화점, 쇼핑센터 (420)	1.도·소매 시장	B-420-01	• 연면적이 1,000㎡ 이상의 도매 및 소매시장용 건물(농수산물 시장, 청과물 시장)
	(420)	2.백화점	B-420-02	• 연면적이 1,000㎡ 이상인 백화점 및 유사 건축물
		3.쇼핑센터	B-420-03	•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점포, 상가 및 대·중형 슈퍼마켓
	사무실빌딩 ( <del>4</del> 21)	1.사무실	B-421-01	• 1,000㎡ 이상의 금융기관, 사무소, 신문사 등 업무용시설(사옥, 신문사, 공공단체용건물, 법무 및 회계사무실 등 일반 사무용 건물)
	오피스텔 (422)	1.오피스텔	B-422-01	• 오피스텔 및 유사한 건축물
	인텔리전트 빌딩(423)	1.인텔리전트 빌딩	B-423-01	• 건물전체가 전산화, 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한 최첨단 건축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공사내용
건축공사 (B)	관공서건물 (11층이하) (430)	1.일반근린 공공시설	B-430-01	• 11층 이하인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도서관, 연수원, 지역 의료보험조합, 마을회관 등 소규모 공공시설물
		2.특별근린 공공시설	B-430-02	•양·정수장 및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공 시설물
		3.군사시설	B-430-03	• 군사시설과 관련한 건축물
		4.교정시설	B-430-04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감별소 포함) 관련 시설물
	관공서건물 (12층이상) (431)	1.일반근린 공공시설	B-431-01	• 12층이상인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도서관, 연수원, 지역의료 보험조합,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물
		2.특별근린 공공시설	B-431-02	• 12층 이상인 양·정수장 및 특수목적으로 사용 되는 공공시설물
		3.군사시설	B-431-03	• 12층 이상인 군사시설과 관련한 건축물
		4.교정시설	B-431-04	• 12층 이상인 교정시설과 관련한 건축물
	호텔,숙박	1.일반숙박시설	B-432-01	•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고시원 포함)
	시설(432)	2.관광숙박시설	B-432-02	•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리조트 숙박시설
	학교 (433)	1.초·중·고등 학교	B-433-01	•초·중·고등학교 시설공사 및 이에 준하는 학교시설(유치원 포함)
		2.대학교 (전문대포함)	B-433-02	•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
		3.직업훈련원	B-433-03	• 직업훈련원 시설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 (각종 군사학교 포함)
		4.연수원	B-433-04	• 연수원, 교육원시설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 (행정기관소속 학교 포함)
	병원 (434)	1.의료시설	B-434-01	• 1,000㎡ 이상인 병원, 한방변원, 요양소, 정신병원 등 의료시설(1,0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로 간주함)
		2.격리병원	B-434-02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병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공사내용
건축공사 (B)	교회,사찰등 종교용 건물 (440)	1.대형 종교시설	B-440-01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등 이와 유사한 종교시설
	전통양식 건축(441)	1.전통양식 (한옥)건축	B-441-01	• 전통양식(한식)의 건축물 및 시설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
	기타문화재 ,유적건물 (442)	1.문화재 시설	B-442-0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정한 문화재시설의 복구. 보수 및 설치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112)	2.기타 유적건물 등	B-442-02	• 기타 유적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 및 복구· 보수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공연, 집회 장소 (450)	1.공연장 시설	B-450-01	• 극장(야외극장제외),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등의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
	(450)	2.집회시설	B-450-02	•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강당 등의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
	경기장,운 <del>종</del> 장 (451)	1.경기장,운동장 시설	B-451-01	• 각종 경기 및 운동경기 관람을 위한 시설물 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전시시설 (452)	1.전시장	B-452-01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등 각종 전시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2.동・식물원	B-452-02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등 기타 유사한 시설 등
	공장,작업 장용 건물	1.공장건물	B-460-01	•물품의 제조, 가공 및 수리를 위한 공장건축물
	(460)	2.단순작업장	B-460-02	• 기계장치등이 없는 단순작업용도의 건축물
	기계,기구설치 (461)	1.기계기구 설치	B-461-01	• 기계기구 설치를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공장플랜트 생산설비는 별도분류(550,560)
	변.발전소용 건물(462)	1.변.발전소건물	B-462-01	• 변전소, 발전소 등의 전력 공급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 <b>*발전소 설비공사는 별도분류(520)</b>
	창고, 차고 터미널 건물 (470)	1.창고시설	B-470-01	• 창고 및 하역장 용도의 건축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
	(470)	2.운수,차고시설	B-470-02	•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건축물, 항만시설 건축물 등
		3.자동차 관련시설	B-470-03	• 터미널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차고 등의 자동차 관련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주차장 포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공사내용
건축공사 (B)	위험물 저장소(480)	1.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B-480-01	• 주유소, 가스충전소, 유류판매소, 유독물판매소 등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건축 시설(490)	1.방송.통신시설	B-490-01	• 방송국, 전신전화국(중계소 포함),촬영소 등의 시설물
		2.노인복지시설	B-490-02	•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물
		3.아동복지시설	B-490-03	•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물
		4.사회복지시설	B-490-04	• 장애자, 사회, 근로복지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노인거주시설	B-490-05	• 실버타운 등 영구적 용도의 노인 주거용 건축물
		6.동물관련시설	B-490-06	• 축사, 기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동물검역소 등의 건축물
		7.식물관련시설	B-490-07	•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채소 재배시설(식물원은 제외)
		8.묘지 및 장례 시설	B-490-08	• 화장장, 납골당, 장례관련 건축물 등
		9.위락시설	B-490-09	• 유흥업소, 카지노, 목욕탕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10.관광휴게시설	B-490-10	•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등의 부속 건축물
		11.청소년 시설	B-490-11	• 청소년회관, 학생회관, 심신수련장, 야영장, 자연학습관, 유스호스텔 등의 시설
		12.위생.냉난방용 건물	B-490-12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위생물 위한 시설물
		13.기타 건축물	B-490-99	• 기타 용도의 건축물(음식점 포함)

### C. 산업설비공사의 종류별 세분류 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공사내용
산업설비	하수종말 처리장(511)	1.하 <del>수종</del> 말처리장 설치공사	C-511-01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기설치 및 각종 부대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C)	폐수종말 처리장(512)	1.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C-512-01	• 각종 농업,입업,공업용 폐수처리를 위한 기기설치 및 각종 부대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쓰레기 소각장(513)	1.쓰레기소각시설	C-513-01	• 쓰레기 소각처리를 위한 기계시설 공사
	기타환경	1.소음·진동방지 시설공사	C-514-01	• 소음, 진동방지를 위한 기기 설치 및 이와 유사한 공사
	시설공사 (514)	2.대기환경측정 및 정화시설공사	C-514-02	•대기환경의 측정 및 정화를 위한 기기설치 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3.기타환경 시설공사	C-514-09	• 상기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환경과 관련한 각종 기기설치 및 부대공사
	발전소	1.수력발전소 설비	C-520-01	• 수력발전소 시설을 위한 기계.기구등의 설치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설비공사 (520)	2.회력발전소 설비	C-520-02	• 화력발전소 시설을 위한 기계.기구등의 설치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3.원자력발전소 설비	C-520-03	• 원자력반전소 시설을 위한 기계.기구등의 설치 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4.열병합발전소 설비	C-520-04	• 열병합발전소 시설을 위한 기계.기구등의 설치 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공 사(521)	1.집단에너지 공급시설공사	C-521-01	•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계.기구등의 설치 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송유관 및 가스관	1.송유관 공사	C-530-01	• 유류 운반을 위한 송유관 부설공사 및 관련 플랜트 시설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530)	2.가스관 공사	C-530-02	• 가스 운반을 위한 가스관 부설공사 및 관련 플랜트 시설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유류저장 및 가스저장 시설	1.유류저장 시설 공사	C-540-01	• 유류저장 및 배출 관련 플랜트 시설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540)	2가스저장 시설 공사	C-540-02	• 가스 저장 및 배출 플랜트 시설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제철소.석유 화학공장 등	1.제철소 생산시설	C-550-01	• 제철생산을 위한 기계시설 공사
	의 산업생산 시설(550)	2.석유화학 생산 시설	C-550-02	• 석유화학 생산을 위한 기계시설공사
	기타 플랜트 설비공사(560)	1.기타 플랜트 설비공사	C-560-01	• 각종 제조등 공장 시설의 기계설치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 D. 조경공사의 종류별 분류 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공사내용
조경공사		1.식재공사	D-610-01	• 경관 및 환경조성을 위한 수목식재, 이식 및 보호 유지공사
(D)	(610)	2.녹화공사	D-610-02	• 지표면 녹화를 위한 공사 및 이와 유사한 공사
	공원	1.공원편의시설 공사	D-611-01	• 공원, 유원지내의 벤치 및 음수대, 놀이기구, 운동기구 등의 편의, 위락시설공사
	조성공사 (611)	2.분수대 및 인공 연못 설치공사	D-611-02	• 공원, 유원지내의 분수대 및 인공연못 등의 설치 공사
	기타 조경시설 (620)	1.기타조경시설 공사	D-620-01	• 상기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조경시설공사와 부대 공사 (도로공사에 부속되는 조경공사는 해당도로공사 로 별도분류)

## 3. [서식5]의⑧ 전문공사의 주요 공종별 건설공사 분류코드

o 기타공사 코드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주요 공종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분류	소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칸막이공사	01A	실내건축공사	01D
실내건축공사	실내인테리어공사	01B	목재창호공사	01E
	목공사	01C	기타 실내건축공사	01Z
	절ㆍ성토 및 매립공사	02A	발파공사	02E
토공사	굴착공사	02B	돌망태 및 호안블럭, 보도블럭및도로경계석공사	02F
	부지・경지정리등의공사	02C	흙막이공사	02G
	철도도상 자갈공사	02D	기타 토공사	02Z
	미장공사	03A	단열재 접착공사	03G
	방수공사	03B	블록 쌓기공사	03H
   미장·방수·조적공사	타일공사	03C	벽돌쌓기 및 붙임공사	03I
미성·병구·조석등사	조적공사	03D	에폭시공사	03J
	미장뿜칠공사	03E	기타 미장방수조적공사	03Z
	다듬기공사	03F		
	돌쌓기공사	04A	석재공사	04D
석공사	돌붙임공사	04B	기타 석공사	04Z
	돌포장공사	04C		
	도장공사	05A	도장뿜칠공사	05E
F 3 3 1	차선 도색공사	05B	분사표면처리공사	05F
도장공사	경기장 바탕 도장공사	05C	기타 도장공사	05Z
	기계도장 및 부식방지공사	05D		
	일반비계공사	07A	특수중량물 및 범운반거상공사	07D
비계・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해체공사	07B	샌드파일공사	07E
	말뚝공사	07C	기타비계구조물해체공사	07Z
	천장, 칸막이, 벽체공사	08P	유리공사	08E
	셔터 및 기타계단, 핸드레일설치공사	08Q	자동문, 방화문, 배연창, 롤업도어 설치공사	08J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방음벽공사	08R	철재, 스텐레스, 브론즈 창호공사	08L
   금속구조물·창호공사	휀스, 난간, 울타리, 낙석방지시 설설치공사	08S	알루미늄 창호공사	08M
	표지판, 표지병, 차선규제봉 및 기타도로안전시설물설치공사	08T	플라스틱 및 비금속재 창호공사	08N
	탱크, 수문, 산업용대형도어, 방폭도어 설치공사	08U	복합재 및 시스템 창호공사	080
	기타 금속구조물공사	08K	기타 창호공사	08Z
			온실설치공사	08I

대분류	소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기와 지붕공사	09A	ALC판 설치공사	09J
	스레트 지붕공사	09B	PC판넬공사	09K
	금속판 지붕공사	09C	세라믹 판넬설치공사	09L
	지붕 단열공사	09D	알루미늄 판넬설치공사	09M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판금 및 PVC공사	09E	사이딩판넬공사	09N
	지붕・판금공사	09F	클린복합판넬공사	090
	건축물조립공사	09G	시멘트보드판넬공사	09P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09H	악세스바닥판넬공사	09Q
	샌드위치 판넬설치공사	09I	기타 지붕공사	09Z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10A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10D
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10B	기타 철근콘크리트공사	10Z
	콘크리트포장공사(2차선미만)	10C		
	상수도기기설치공사	13A	상수도관 세척 및 갱생공사	13E
	하수처리기기설치공사	13B	하수, 우수관 세척 및 갱생공사	13I
상·하수도설비공사	상·하수도, 농공업용수도 용수관 공사	13C	기타 상하수도설비공사	13Z
	스프링쿨러설치공사	13D		
	보링공사	14A	어스앙카공사	14E
보링・그라우팅공사	그라우팅공사	14B	현장타설말뚝공사	14F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14C	기타 보링・그라우팅공사	14Z
	궤광공사	15A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15E
	레일설치 및 보수, 분기부공사	15B	건널목보판공사	15F
철도・궤도공사	침목공사 및 도상공사	15C	기타 철도・궤도공사	15Z
	궤도임시받침공사등 보수,복구공사	15D		
	아스팔트포장공사	16A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16D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공사 (2차선 이상)	16B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16F
	유색·투수콘크리트 포장공사	16C	기타 포장공사	16Z
	수중구조물설치공사	17A	계선부표설치공사	17D
수중공사	수중관설치 및 해체공사	17B	항로표지설치공사	17E
	수중암석파쇄공사	17C	기타 수중공사	17Z
	조경수목식재공사	18A	조경식물의 유지관리공사	18D
조경식재공사	잔디 · 지피식물 · 조화류등의 식재공사	18B	기타 조경식재공사	18Z
	식재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18C		

대분류	소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조경석·인조암·인조목 등 설치공사	19A	인조잔디설치공사	19D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야외의자 놀이가구, 운동가구 등의 설차공사	19B	기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9Z
	조형물설치공사	19C		
	건축물과 시설물의 철골제작, 조립, 설치공사	21A	강재육교제작, 조립설치공사	21E
· 강구조물공사	교량철강조립, 설치공사	21B	자주식주차장설치공사	21F
	철탑공사	21C	기타 강구조물공사	21Z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21D		
실 철강재설치공사	교량의 철구조물제작, 조립,설치공사	23A	기타 철강재설치공사	23Z
20112101	건축물과 시설물의 철골제작,조립,설치공사	23B		
사는 서키고기	케이블카 설치,제거공사	24A	기타 삭도설치공사	24Z
삭도설치공사 	리프트의설치,제거공사	24B		
준설공사	해양・항만등준설공사	25A	하수로, 배수로 등의 준설공사	25C
正治67年	하천등의준설공사	25B	기타 준설공사	25Z
	승강기(E/V)설치공사	26A	기계식주차설비공사	26D
승강기설치공사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26B	인양기 및 곤도라, 호이스트 등 설치공사	26E
	컨베이어설치공사	26C	기타 승강기설치공사	26Z
	강철재보일러설치・보수공사	51A	1종압력용기설치・보수공사	51G
	주철재보일러설치 · 보수공사	51B	2종압력용기설치・보수공사	51H
	온수보일러설치・보수공사	51C	온돌설치 · 보수공사	52A
난방시공업	구멍탄용온수보일러 설치·보수공사	51D	요업요로설치・보수공사	53A
	축열식전기보일러 설치·보수공사	51E	금속요로설치・보수공사	53B
	태양열집열기설치ㆍ보수공사	51F	기타 난방공사	53Z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점검・정비공사	29A	기타 시설물유지관리공사	29Z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29B		

<sup>※</sup>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등 5개 업종), 기계설비 및 가스시공의 경우 "코드" 는 "업종코드"로 입력함.(자동입력 처리됨)

## 4. [서식5]의 ①본사소재지 및 ⑨ 공사지역별 코드

코드	지역	코드	지역
11	서울	36	전남
21	부산	37	경북
22	대구	38	경남
23	인천	39	제주
24	광주	40	북한
25	대전	41	중동
26	울산	42	아세아(중동제외)
31	경기	43	유럽
32	강원	44	아프리카
33	충북	45	오세아니아
34	충남	46	아메리카
35	전북		

## 5. [서식5]의 ⑫ 도급종류별 코드

코드	도급종류		
1	원도급		
2	하도급		
3	자기공사		

# 6. [서식5]의 🚯 발주자 분류별 코드

구분	분류 코드	발주자	분류내용
조이 기 버	04100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통계청, 조달청, 국세청, 관세청 및 그 산하기관으로 분류
중앙정부 기 관	04200	조달청	조달청 및 그 산하기관 (조달청이 대행 발주한 경우 원 발주기관명으로 분류)
	0430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및 그 산하기관 (단, 시·도, 시·군·구 및 그 산하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분류)
	04400	국 방 부	국방부 및 그 산하기관 (군부대 제외)
	04500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산하기관 - 국립대학교, 국립초급대학, 국립전문대학 및 기타 국립교육기관 ※시·도교육위원회, 시·군·구교육청, 공립학교는 지방 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사립학교는 963으로 분류
	04600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국립박물관 포함)
	04700	농림수산 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그 산하기관
	04800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그 산하기관
	04900	환 경 부	환경부, 환경지청 및 산하기관
	050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산하기관
	0510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및 그 산하기관
	05200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산하기관 (지방국토관리청은 별도 분류)
	05201	서울지방국토관린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그 산하기관
	05202	부산지방국토관린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그 산하기관
	0520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린청 및 그 산하기관
	052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그 산하기관
	0520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그 산하기관
	05400	법 무 부	법무부, 검찰청, 교도소 및 그 산하 기관
	05500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및 그 산하기관
	05600	통 일 부	통일부 및 그 산하기관
	05700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및 그 산하기관
	0580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
	05900	기 타	위의 정부기관 및 그 산하기관을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부처

구분	분류 부호	발주자	분류내용
지방자치 단 체			- 서울특별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각 시·도, 시·군·구, 지하철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본부 등 - 교육위원회, 시·군·구 교육청, 공립학교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사립학교는 교육서비스업) - 소방서 등
	0110	서 울 시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 소방서
	0210	부 산 시	부산광역시 및 그 산하기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 소방서
	0220	대 구 시	대구광역시 및 그 산하기관, 대구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 소방서
	0230	인 천 시	인천광역시 및 그 산하기관,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 소방서
	0240	광 주 시	광주광역시 및 그 산하기관,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 소방서
	0250	대 전 시	대전광역시 및 그 산하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 소방서
	0260	울 산 시	울산광역시 및 그 산하기관,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 소방서
	0310	경 기 도	경기도 및 그 산하기관,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 소방서
	0320	강 원 도	강원도 및 그 산하기관,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 소방서
	0330	충청북도	충청북도 및 그 산하기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 소방서
	0340	충청남도	충청남도 및 그 산하기관,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 소방서
	0350	전 라 북 도	전라북도 및 그 산하기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 소방서
	0360	전 라 남 도	전라남도 및 그 산하기관,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 소방서
	0370	경 상 북 도	경상북도 및 그 산하기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 소방서
	0380	경상남도	경상남도 및 그 산하기관,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 소방서
	03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 산하기관,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 소방서

구분	분류 부호	발주자	분류내용
기타	091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단체를 말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 통신연구진흥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증권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홍재단, 한국 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홍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한국문화콘텐츠진홍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촌공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공해방지사업단, 대한무역투자진홍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홍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홍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소업기술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조프트웨어진홍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리거래소, 우정사업진홍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소프트웨어진홍원, 한국정보문화진홍원, 한국정보보호진홍원, 한국정보사회진홍원, 한국정보보호진홍원, 한국정보사회진홍원, 한국정보사회진홍원, 한국정보무화진홍원, 한국정보보험공단, 한국환경기술진홍원, 한국본건산업진홍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홍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안전관당단, 한국소방검정공사

구 분	분류 부호	발 주 자	분 류 내 용
기타	091	공공단체	- 기타 공공기관 (주)기은캐피탈, 기보캐피탈, 기은신용정보(주),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주식회사아이비케이시스템, (주)정리금용공사, 중소기업은행, 코스콤, 한국기업테이터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업은행, 한국투자공사,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정북대학교병원, 정상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중남대학교병원 청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 상대학교병원 등 대학원원 등 상대학교병원 등 상대학교 원 등 상대

구 분	분류 부호	발 주 자	분 류 내 용
기타	091	공공단체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기술 거래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 수력원자력(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식 회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별정우체국연합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컴퓨터프로 그램보호위원회, 국립암센터, 대한결핵협회, 대한에이즈예방 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 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친환경상품진흥원, 학교법인기능대학, 노사발전재단, 한국기 술교육대학교, (주)코레일개발, (주)코레일에 지나어링,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애트컵, (주)코레일엔 지나어링,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루이서 비스(주),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주식 회사, 코레일트랙(주), 코레일전기(주), 한국토지신탁, 부산항부 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경제인 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장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 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 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본初세연구원, 한국시합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시합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 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이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 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8관광개발(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전국 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바처투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 원, 금융감독원, 한국자산신탁(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 품질원,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제)한국에너지자원 기술기획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재)우정복지협력회, 울산 항만공사, (주)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만보안(주)

구 분	분류 부호	발 주 자	분 류 내 용
기타	091	공공단체	* 농협, 수협, 축협 중앙회 : 경제사업부문, 지도관리부문은 기타공공단체로 분류하고, 신용사업부문은 민간의 금융· 보험 및 사업서비스업(956)으로 분류 예) 경제사업부문의 발주 공사명 : ○○물류센타, ○○ 공판장 신축공사 등 지도관리부문의 발주 공사명 : ○○연수원 개축공사 등 신용사업부문의 발주 공사명 : ○○ 지점 신·개축공사 등 * 농협, 수협, 축협 중앙회는 크게 경제사업부문, 지도 관리부문, 신용사업부문으로 조직되어 있음
	092	국영기업체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라 시장형공기업, 준시장형공기업을 말함.  - 시장형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 준시장형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등  - 지방자치단체의 간접경영사업 지하철공사(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설·환경·경륜공단(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국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부산, 대구, 인천, 인천남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대전, 울산, 울산남구,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분류		
구 분 부호	발 주 자	분 류 내 용
092	국영기업체	용인시, 시홍시, 화성시, 김포시, 안성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안산시, 군포시, 가평군, 연천군, 춘천시, 속초시, 동해시, 정선군, 청주시, 전주시, 구미시, 안동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등 - 기타공사(지자체 50%이상출자)
		경기평택항만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 기타공사(지자체 100%이상출자)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관광공사, 김 대중컨벤션센터,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 장관리공사, 경기관광공사, 광주지방공사, 용인지방공사, 하남시도 시개발공사, 김포시도시개발공사, 남양주시도시공사, 평택지방공 사, 화성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 사, 구미원예수출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창녕군개발공사 등
		<ul> <li>지방공기업 제2조 1항에 따른 직접경영사업</li> <li>·상수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안산,용인,의정부,남양주,평택,광명,시흥,군포,화성,파주,이천,구리,포천군,광주,안성,하남,의왕,양주군,오산,여주군,양평군,동두천,과천,가평,김포,연천군,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홍천군,정선군,철원군,영월군,평창군,인제군,고성군,청주,충주,제천,옥천군,청원군,음성군,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예산군,당진군,홍성군,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부안,고창,목포,여수,순천,나주,영암군,광양,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문경,울진군,경산,철곡,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창녕군,거창군,함안군,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li> <li>·하수도(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수원,성남,부천,안산,의정부,광명,구리,과천,시흥,포천,오산,여주,용인,군포,의왕,남양주,안성,광주,안양,김포,가평,평택,화성,춘천,속초,강릉,충주,청주,제천,공주,천안,아산,서산,보령,당진,전주,익산,정읍,완주,나주,목포,순천,영암,경주,상주,구미,영천,정산,안동,영주,진해,창원,김해,진주,사천,마산,통영,밀양,양산,거제,거창,창녕,제주)</li> <li>·공영개발(대구달성군,인천,수원,성남,고양,의정부,남양주,평택,</li> </ul>

		지구조성,춘천,원주,강릉,속초,충주,음성군,계룡,천안,보령, 아산,연기군,익산,목포,순천,광양,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밀양) ·지역개발기금(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제3섹터(민·관 공동출자기업)  ·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기업이나 공사를 설립한 기관을 통칭  · 분류기준 : 공공과 민간의 출자비중과 설립근거법, 대표이사 선 출방법,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을 고려하여 민간과 공공으로 분류(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되는 것은 공공으로 분류)  (지자체25~50%출자)  서울관광마케팅(주), (주)벡스코, 부산관광개발(주), (주)엑스코, (주)광주광역정보센터,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안산도시개발(주), (주)강원심층수, 청원레저(주), 와인코리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삽교호함상공원, (주)홍주미트, (주)무안황토랑유통공사, 경북통상(주), (주)경남무역, 가온소프트(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지자체25%미만출자)  강남모노레일(주),인천대교(주),한국씨이에스(주),수완에너지(주),(주)대전 농산물유통센터, (주)케이알씨넷, (주)이름다운인제관광(주)청주테크노폴리스, (주)완도수산물유통,(주)케이씨피드,(주)제주항공  (주의) 제3섹터와 민자유치사업의 구분 요령  · 제3섹터의 경우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을
		말하며, 민자유치 사업의 경우는 민간이 발주한 공공사업을 말함  ·제3섹터의 경우 사업대상이 자유로우나,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에 사업대상이 정해진 것에 한함  ·제3섹터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민자유치대상사업일 경우 민자유치사업으로 분류.
		□ 지방공사 구조조정으로 민영화되면 민간으로 분류  • 민영화 : 안성축산진흥공사,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 철원농특산물 유통공사  • 청산 : 김제개발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 고창화훼생산공사, 금강도선공사
093	주한 외국기관	주한외국군부대, 외국상사, 주한외국공관 등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기관
094	해외 외국기관	해외에서 발주한 공사는 모두 여기 해당

구분	분류 부호	발주자	분류내용
민간부문 제 조 업	900	식 료 품	사람 또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각종 식료품 및 동물용 사료 료 가공하는 사업
	901	음 료 품	음료, 발효주 및 비알콜 등의 제조업
	902	담 배	담배제조업
	903	섬 유 제 품	제사 및 방적업, 직조업,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부직포등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
	904	의복·의복악 세사리 및 모 피제품	각종 직물, 모피 등을 재단·재봉하여 의복류, 모자 및 의복 악세사리를 제조
	905	가죽, 가방 및 신발	가죽제조, 가방, 핸드백 등의 제조, 신발 및 관련부품 등의 제조
	906	목재 및 나무 제품(가구제외)	원목, 제재목, 건축용 조립 구조물, 단판 및 합판, 목재 초리 및 가공, 목제 용기, 콜크제품, 목제도구 및 장비 등과 같은 각종 나 무제품과 나무제품의 부분품을 제조
	90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나무, 넝마, 폐지 및 기타 섬유물질로 펄프를 제조하거나 펄프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활동과 종이를 재가공한 가공지, 종이용기와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의 제품을 제조
	908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기록매체, 기타 간행물의 출판, 상업 인쇄 및 인쇄관련 보조활동, 오디오 영상물 등의 기록물 복제
	90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제품	석탄을 처리하여 코크스 및 관련 생산품을 생산하거나 원유, 역청광물 및 이들의 분할물을 정제 또는 처리하는 활동과 가공하는 산업
	910	화 합 물· 화 학 제 품 (의약품 제외)	화학적 처리를 주 제조과정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화학적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제품을 혼합 및 기타 최종 처리하여 단일· 혼합·화합 등 복합화합물 또는 화학제품을 제조
	911	의료용물질· 의 약 품	인간 또는 동물의 각종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데 사용 되는 의료용품을 제조
	912	고무·플라스 틱제품	구입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사출·압출·성형 및 기타 가공하여 각종 형태의 1차 제품, 적층판 및 기타 단순 가공품, 가정용, 산업용 또는 기타용의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조
	913	비금속 광물 제품	돌, 모래, 점토형태의 각종 비금속광물을 원료로 요업, 시멘트 및 유리 등의 제조, 가공 등의 산업 활동
	914	제1차 금속	고로, 전로, 압연및 가공설비를 갖추고 각종 금속광, 금속스크랩 또는 찌꺼기를 제련, 정련·용해·합금처리·주조·압출·압연, 연신· 금속표면 처리 및 기타 처리하여 각종 1차 형태의 금속반성품 및 주물제품을 생산

구분	분류 부호	발주자	분류내용
민간부문 제 조 업	915	금속가공제품 (기계·기구제외)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유사저장용기, 증기발생기 및 중앙 난방용보일러, 금속압단제품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 와 금속임가공처리업,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금속 파스너 및 철선제품, 가정용 금속제품 및 기타 조립 금속 제품을 제조
	916	전자부품 컴퓨 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전자부품 및,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방송장비, 유선전신 또는 전화용 기기, 통신기기 및 관련기기 등을 제조
	917	의료 · 정밀 · 광 학기기 · 시계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
	918	전기장비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제조, 전기공급 및 제어장 치제조, 절연 및 케이블제조, 축전지 및 일차전지제조, 전 구 및 조명장치 제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장비 제조
	919	기타기계 및 장비	범용성의 기계, 내연기관 및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기 타 유사장비 등의 제조
	9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 자동차 부품 제조
	921	기타운송 장비	선박, 보트건조 및 수리업, 철도장비제조,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제조
	922	가구 제조	각종재료(석재, 시멘트 또는 도자기제 제외)로 가구, 캐비 넷 및 관련 장치물과 매트리스 등을 제조
	923	기타 제품 제조	특정 산업영역에 분류되지 않는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으로서 귀금속 제품, 악기류, 운동 및 경기 용구, 인형, 장난 감 및 오락용품, 사무 및 회화용품 및 기타 잡제품을 제조
민간부분 비제조업	950	농림, 임업, 어업	작물생산, 축산업, 양잠업, 조경작물식재관리업, 작물생산 관련서비스업, 수렵업, 영림업, 벌목업, 임업서비스업, 해면어업, 양식업, 기타 어업(내수면어업 등)
	951	광 업	무연탄광업, 갈탄광업, 기타 석탄광업, 원유 및 천연가 스채광업, 철광업, 비철금속광업, 토사채취업, 화학 및 비료 원료 광물광업, 석회석, 요업 및 내화광물광업, 기 타 광업(흑연, 활석, 석고 등)
	952	전기·가스 증기·수도	전기업, 가스제조 및 공급업, 증기 및 온수공급업, 수도사업 등

구분	분류	발주자	분류내용
	부호 953	하수 · 폐기물처 리 · 원료재생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 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활동,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과 원 료재생 활동을 포함
	954	건 설 업	건물도급건설업, 건물자영건설업,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 교 량 및 고가로, 댐 및 저수시설, 터널, 지하펄 및 철도건설, 기 타 토목건설, 전문직별건설업(배관, 석공, 목공, 유리창호 등) 분양, 임대한 것은 부동산업에 분류
	955	도·소매업	농산물 및 음식료품, 섬유 및 의류, 의약품 및 화학제품 도매, 기계 및 장비도매, 기타도매, 일반소매, 종합소매 등
	956	운 수 업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957	숙박 • 음식업	식당, 주점, 숙박업, 기타 숙박업 등
	958	방송통신 및	출판업, 소프트웨어 제작, 영상 및 오디오 기록활동,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공급, 정보기술 및 기타정보 서비스 활동
	959	금융 • 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960	부동산 · 임대 업	부동산업, 조작자가 없이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 또는 가 정용품 임대, 무형재산권임대
	96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 법무, 회계, 광고,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건축설계 등 고도의 전문 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를 생산(수의업, 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 등)
	96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업, 조경관리업, 고용알선업, 여행사, 경비, 경호업 등 사무지원 서비스 등의 사업운영 관련 서비스
	963		교육서비스업(국립, 공립 제외)
	964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병ㆍ의원 및 유사의료업, 사회복지사업
	96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공연시설 운영 등(도서관, 사적지 포함) 경기자, 골프장, 스키장 운영 등(유원지, 테마파크, 오락장) 식물원, 동물원 운영 등
	966		산업,노동 및 전문가 단체 또는 조합 연합회, 종교 및 정치 및기타 협회 및 단체 산업용 기계장비, 컴퓨터·사무용 기계장비, 자동차 및 소비용품의 경상적인 유지수리 세탁소, 이·미용실, 장의업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999	기 타	개인이 비영업용건물에 대해 발주한 경우 여러 공사건을 묶어 발주자를 여러명 기입한 경우 기타 민간부분에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등

## 7. [서식5]의 ⑭ 입찰형태별 코드

도급종류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 8. [서식5]의 ② 비고에는 건설공사실적 제출서류 목록코드

코드	건설공사실적 제출서류
1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5	도급(하도급)계약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9	기타

## 9. [서식7]의 ⑨자격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코드

코드	기술자 자격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02 03	자격증(또는 경력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 보유(또는 경력)증명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 보유 및 경력증명서 대한설비공사협회 인정기능사 보유 및 경력증명서

### 10. [서식7]의 ⑩재직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코드

코드	재직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01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02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03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05	대표자(대표자, 대표)
06	갑근세납입증명서 + 근로계약서
08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 보유(또는 경력)증명서